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2년 4월 전산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2012년 4월 생산은 건설업(-7.5%)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은 보합, 서비스업(1.0%)에서는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비금속광물(-13.1%), 영상음향통신(-12.2%), 기계장비(-3.2%)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화학제품(4.8%), 자동차(4.5%), 반도체 및 부품(3.1%)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5.3%), 협회·수리·개인(-2.8%), 운수(-2.0%)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9.4%), 하수·폐기물처리(8.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4.7%)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2012년 4월 소비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0.4%, 5.0% 증가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는 감소(-1.4%)하였으나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4%)와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1.3%)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0.4% 증가

– 설비투자는 일반산업용기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특수산업용기계, 금속 및 금속제품 등에서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0% 증가

– 건설기성(경상)은 토목공사는 증가하였으나 건축공사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하였으며, 건설수주(경상)는 공공부문에서 주택, 토지조성 및 발전·통신 등의 발주가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에서의 사무실, 기계설치 등의 발주가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4.4% 감소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은 증가하였으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비자기대지수 등은 증가하고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등이 감소하여 전월과 동일

◆ 2012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5% 상승(생활물가지수 2.2% 상승)

- 2012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2(2010=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2%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하여 지난달과 같은 상승률을 보임.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기타상품 및 서비스(-4.5%), 통신(-3.4%) 부문만 하락하였고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6.4%), 의류 및 신발(5.0%), 교통(4.9%), 주택·수도·전기·연료(4.5%) 부문 등을 중심으로 상승
 - 2012년 5월 생활물가지수는 106.1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2% 각각 상승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9					2010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4월	1/4	4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6.8	3.8	0.0(0.9)
	제조업 생산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7.0	4.2	0.0(0.8)
	출하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7.4	3.3	-1.1(0.5)
	내수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2.4	0.3	-2.4(2.7)
	수출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13.7	6.7	0.4(-1.8)
	서비스업생산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3.2	2.5	1.0(0.2)
소비	소비재 판매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5.2	2.0	0.4(1.0)
투자	설비투자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4.2	5.4	4.8	-3.1	-4.7	0.7	2.2	9.4	5.0(4.5)
물가		3.9	2.8	2.0	2.4	2.8	2.7	2.6	2.9	3.6	3.0	4.8	4.2	4.8	4.0	4.0	3.9	3.0	2.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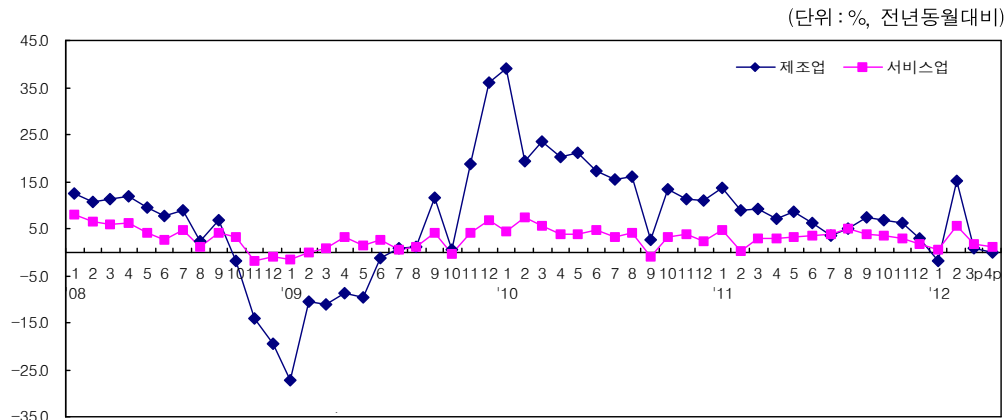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5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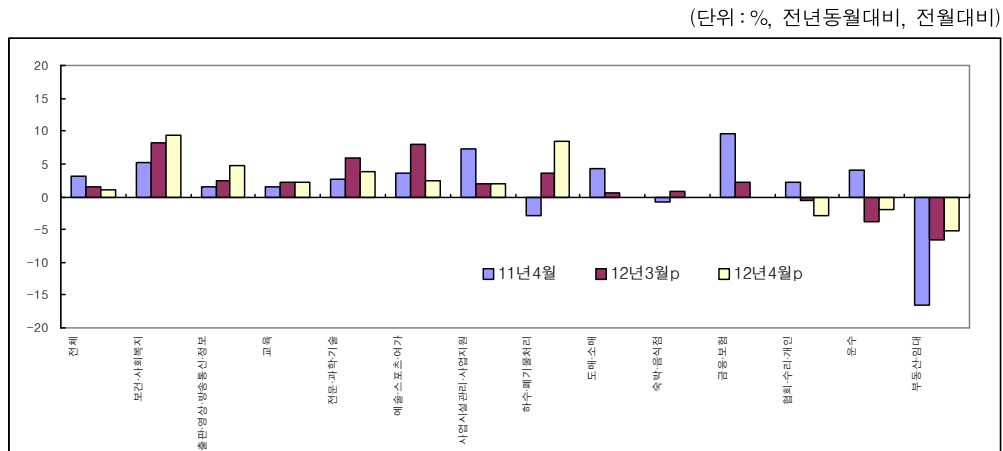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2012.5), 『2012년 4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2년 5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93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0천 명(1.8%)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049천 명으로 254천 명(1.7%) 증가하였고, 여성은 10,890천 명으로 206천 명(1.9%) 증가하였음.

- 2012년 5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74.1%)은 전년동월대비 0.3%p, 여성(51.3%)도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그림 3 좌측 참조)
- 2012년 5월 중 고용률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남성의 고용률은 71.7%로 전년동월대비 0.5%p, 여성의 고용률은 49.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그림 3 우측 참조)
- 2012년 5월 중 취업자는 25,13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2천 명(1.9%)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56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6천 명(1.9%)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57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6천 명(1.9%)이 증가하였음(그림 4 참조).
- 2012년 5월 중 실업자는 80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 명(-1.5%)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남성 실업자는 48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천 명(-4.2%) 감소, 여성 실업자는 31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 명(3.0%) 증가
 - 실업률은 남성이 3.2%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 여성은 2.9%로 전년동월과 동일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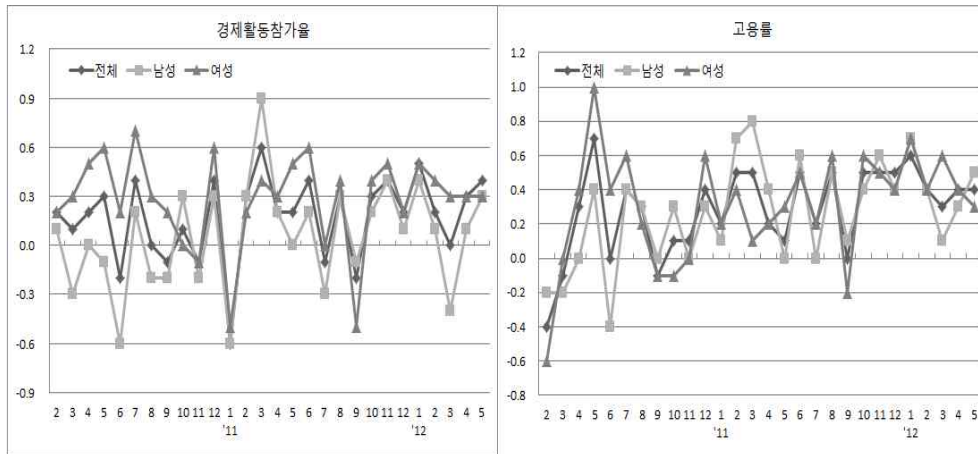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2012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경제활동인구	24,796 (1.4)	24,488 (1.3)	25,437 (1.6)	25,480 (1.5)	25,269 (1.1)	25,202 (1.6)	24,873 (1.6)	25,653 (1.6)	25,939 (1.8)
참가율	60.8	59.9	62.0	62.1	61.5	61.1	60.1	61.9	62.5
취업자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661 (1.5)	24,483 (1.5)	24,462 (2.0)	23,927 (2.0)	24,758 (1.9)	25,133 (1.9)
고용률	58.9	57.4	59.9	60.1	59.5	59.4	57.8	59.7	60.5
실업자	808	1,028	865	819	786	740	947	895	807
실업률	3.3	3.9	3.4	3.2	3.1	2.9	3.8	3.5	3.1
비경제활동인구	15,962 (0.3)	16,392 (0.8)	15,559 (0.4)	15,523 (0.6)	15,847 (1.2)	16,014 (0.3)	16,495 (0.6)	15,805 (0.6)	15,579 (0.4)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2. 6), 『2012년 5월 고용동향』.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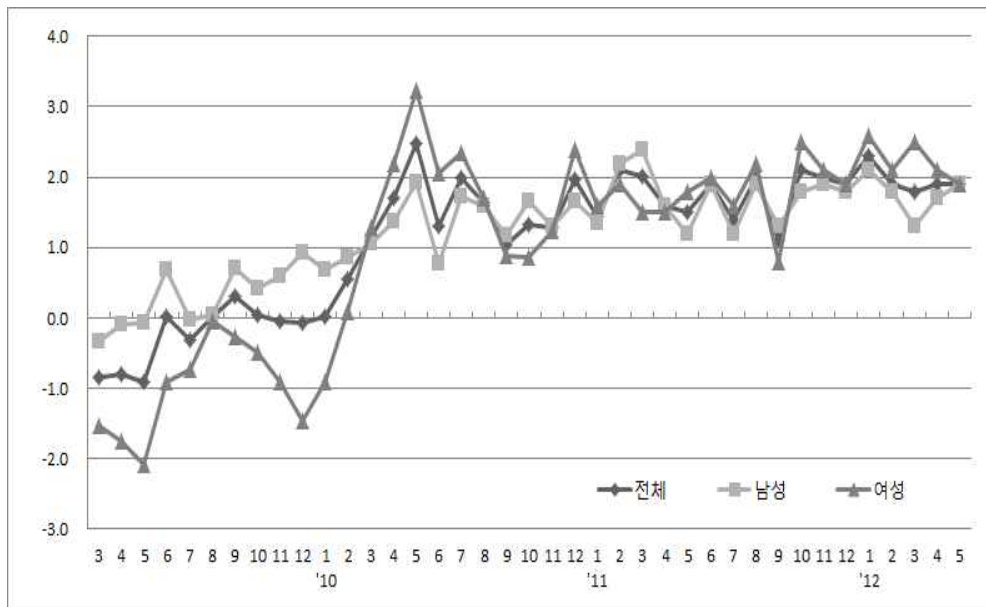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2년 5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5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천 명(0.4%)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25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 명(-0.1%) 감소하였고,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32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2천 명(0.6%)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9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6천 명 감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32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3천 명(-7.2%) 감소.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 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211천 명으로 65천 명(-1.5%)이 감소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증가세 지속

- 2012년 5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04천 명, 3.5%), 도소매·숙박음식점업(161천 명, 3.0%), 전기·운수·통신·금융업(63천 명, 2.1%), 건설업(33천 명, 1.8%)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21천 명, -1.2%), 제조업(-67천 명, -1.6%)에서는 감소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2012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4월			5월	
전 산업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661 (1.5)	24,483 (1.5)	24,462 (2.0)	23,927 (2.0)	24,758 (1.9)	25,133 (1.9)
농림어업	1,544 (-2.2)	1,207 (-2.3)	1,736 (0.2)	1,777 (1.5)	1,704 (-2.9)	1,521 (-1.5)	1,176 (-2.6)	1,613 (-1.8)	1,755 (-1.2)
제조업	4,131 (7.0)	4,139 (5.8)	4,127 (2.8)	4,137 (2.5)	4,041 (-0.3)	4,056 (-1.8)	4,037 (-2.5)	4,027 (-2.0)	4,071 (-1.6)
건설업	1,761 (3.3)	1,641 (-0.2)	1,774 (-2.3)	1,787 (-1.5)	1,755 (-2.0)	1,832 (4.0)	1,721 (4.8)	1,787 (3.0)	1,819 (1.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442 (-1.3)	5,471 (-1.1)	5,457 (-0.1)	5,452 (-1.3)	5,496 (1.0)	5,542 (1.8)	5,571 (1.8)	5,582 (2.5)	5,613 (3.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234 (1.0)	8,097 (3.0)	8,529 (2.8)	8,568 (2.9)	8,473 (2.8)	8,486 (3.1)	8,398 (3.7)	8,748 (3.7)	8,872 (3.5)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55 (1.9)	2,880 (1.6)	2,933 (3.6)	2,925 (3.3)	3,001 (6.6)	3,011 (5.5)	3,011 (4.5)	2,986 (2.4)	2,988 (2.1)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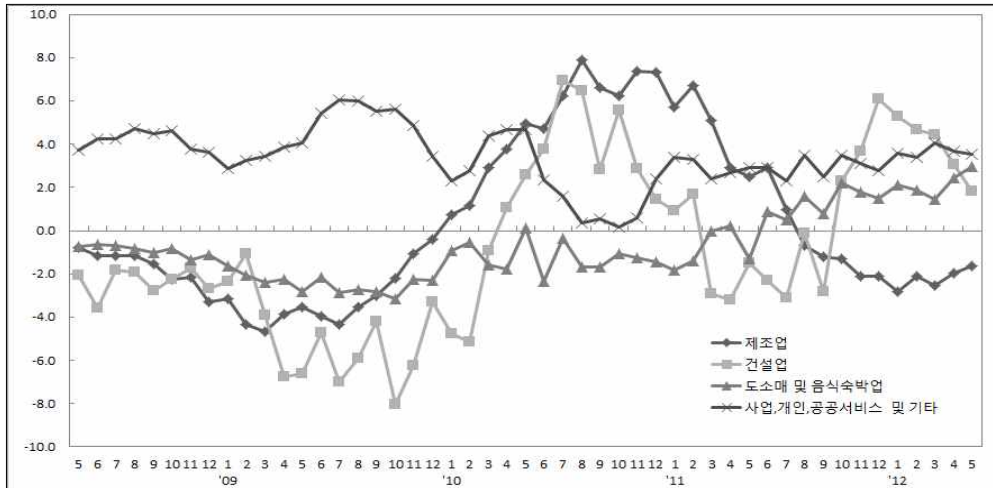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2.6), 『2012년 5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자영업자 증가 추세 지속

○ 2012년 5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19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3천 명(2.3%)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93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9천 명(1.8%)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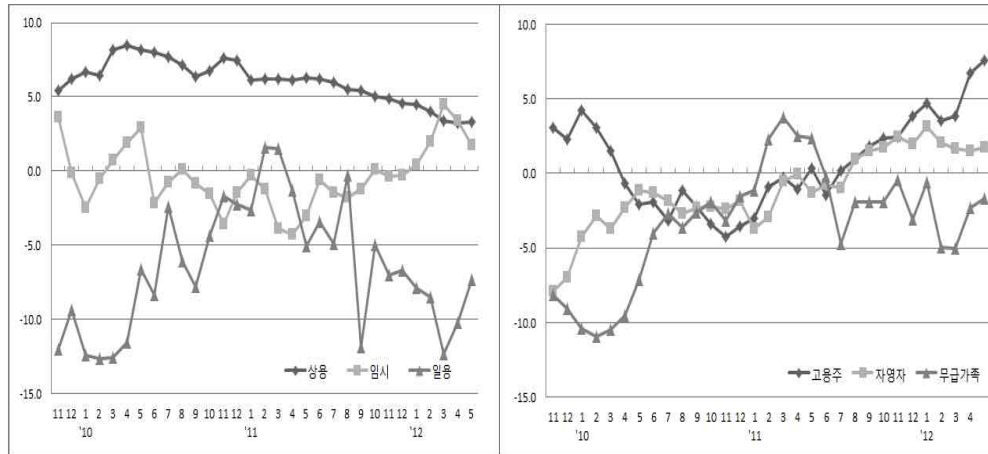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064천 명으로 356천 명(3.3%), 임시근로자는 5,153천 명으로 89천 명(1.8%)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718천 명으로 136천 명(-7.4%)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6 좌측 참조)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고용주 포함)는 5,846천 명으로 186천 명(3.3%)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1,351천 명으로 23천 명(-1.7%) 감소하였음.
- 2011년 8월 이후 고용주·자영업자는 양(+)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그림 6 우측 참조)

○ 2012년 5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29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1천 명(2.8%)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564천 명으로 405천 명(1.9%) 증가

- 18시간 미만 취업자 1,081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1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 명(3.9%) 증가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2012		
	4/4분기	1/4분기	2/4분기	2011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월	5월
전 체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661 (1.5)	24,483 (1.5)	24,462 (2.0)	23,927 (2.0)	24,758 (1.9)	25,133 (1.9)
비임금근로자	6,778 (-2.5)	6,542 (-1.5)	7,004 (-0.3)	7,035 (-0.2)	6,965 (-0.4)	6,878 (1.5)	6,650 (1.6)	7,079 (1.9)	7,198 (2.3)
자영업자	5,514 (-2.6)	5,399 (-2.1)	5,657 (-0.7)	5,660 (-0.9)	5,680 (0.6)	5,639 (2.3)	5,548 (2.8)	5,805 (2.9)	5,846 (3.3)
무급가족종사자	1,264 (-2.2)	1,143 (1.7)	1,348 (1.5)	1,374 (2.4)	1,285 (-4.7)	1,239 (-2.0)	1,102 (-3.6)	1,274 (-2.3)	1,351 (-1.7)
임금근로자	17,211 (3.2)	16,917 (3.2)	17,568 (2.5)	17,626 (2.2)	17,518 (2.3)	17,585 (2.2)	17,277 (2.1)	17,679 (1.9)	17,935 (1.8)
상용근로자	10,320 (7.3)	10,413 (6.2)	10,681 (6.2)	10,708 (6.3)	10,731 (5.6)	10,820 (4.8)	10,825 (4.0)	10,957 (3.2)	11,064 (3.3)
임시근로자	5,052 (-2.2)	4,804 (-1.8)	5,041 (-2.7)	5,064 (-3.0)	5,072 (-1.5)	5,042 (-0.2)	4,914 (2.3)	5,095 (3.4)	5,153 (1.8)
일용근로자	1,838 (-2.8)	1,701 (0.1)	1,846 (-3.3)	1,854 (-5.1)	1,716 (-5.7)	1,723 (-6.3)	1,538 (-9.6)	1,627 (-10.2)	1,718 (-7.4)
36시간 미만	3,090 (4.4)	3,246 (-33.1)	3,210 (0.4)	3,200 (-0.1)	8,464 (154.2)	3,217 (4.1)	3,313 (2.1)	3,367 (3.6)	3,290 (2.8)
36시간 이상	20,620 (1.1)	19,739 (11.7)	21,067 (1.7)	21,160 (1.5)	15,419 (-24.3)	20,937 (1.5)	20,081 (1.7)	21,096 (1.5)	21,564 (1.9)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2. 6), 『2012년 5월 고용동향』.

◆ 전년동월대비 대졸 실업률 증가

- 2012년 5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30대(3.1%, -0.1%p), 40대(1.8%, -0.2%p), 50대(1.8%, -0.3%p), 60세 이상(1.7%, -0.5%p)에서 감소
 - 15~29세(8.0%, 0.7%p)에서는 증가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대졸 이상(3.5%, 0.2%p)에서는 증가하였고, 중졸 이하(2.0%, -0.2%p), 고졸(3.3%, -0.3%p)은 감소
- 2012년 5월 중 전체 실업자 819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5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 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56천 명으로 21천 명 감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2012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4월			4월	5월
전 체	808(3.3)	1,028(4.2)	865(3.4)	819(3.2)	786(3.1)	740(2.9)	947(3.8)	895(3.5)	807(3.1)
15~29세	297(7.1)	372(8.8)	332(7.9)	311(7.3)	284(6.7)	292(7.1)	346(8.2)	357(8.5)	342(8.0)
30~39세	194(3.2)	237(4.0)	211(3.5)	191(3.2)	189(3.2)	171(2.9)	190(3.2)	199(3.3)	184(3.1)
40~49세	151(2.2)	167(2.5)	145(2.1)	139(2.0)	138(2.0)	131(1.9)	164(2.4)	141(2.1)	123(1.8)
50~59세	114(2.3)	133(2.7)	107(2.0)	109(2.1)	108(2.1)	94(1.8)	124(2.3)	125(2.3)	98(1.8)
60세 이상	53(1.9)	119(4.5)	70(2.3)	69(2.2)	67(2.1)	53(1.8)	124(4.4)	74(2.3)	60(1.7)
중졸 이하	112(2.2)	195(4.1)	112(2.1)	118(2.2)	119(2.3)	108(2.1)	187(4.0)	127(2.5)	103(2.0)
고졸	392(3.9)	465(4.6)	408(4.0)	364(3.6)	372(3.7)	349(3.5)	408(4.1)	370(3.7)	335(3.3)
대졸 이상	304(3.1)	369(3.8)	345(3.4)	337(3.3)	296(2.9)	284(2.8)	352(3.4)	398(3.8)	369(3.5)
취업무경험실업자	38	52	45	42	45	44	58	50	51
취업유경험실업자	770	977	820	777	741	696	889	846	756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2. 6), 『2012년 5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2년 3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5.5% 상승
- 2012년 3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8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2,732천 원) 5.5%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5.6% 상승해 2,452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6.3% 상승하여 187천 원을 기록하였고, 특별급여 증가율은 3.7% 상승하여 414천 원을 기록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2년 3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모두 상승하여 2011년 3월 대비 5.3% 상승한 3,053천 원을 기록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2.7% 상승한 1,287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1/4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51천 원으로 전년동기(2,830천 원)대비 7.8%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1년 1/4분기 대비 7.7% 상승한 3,223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1년 1/4분기 대비 5.9%, 초과급여는 4.4%, 특별급여는 17.0% 상승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1년 1/4분기 대비 13.7% 상승한 1,306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3월 실질임금은 2.8% 증가함.
 - 2012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2.8%를 기록함(그림 7 참조).
 - 2012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4.7%를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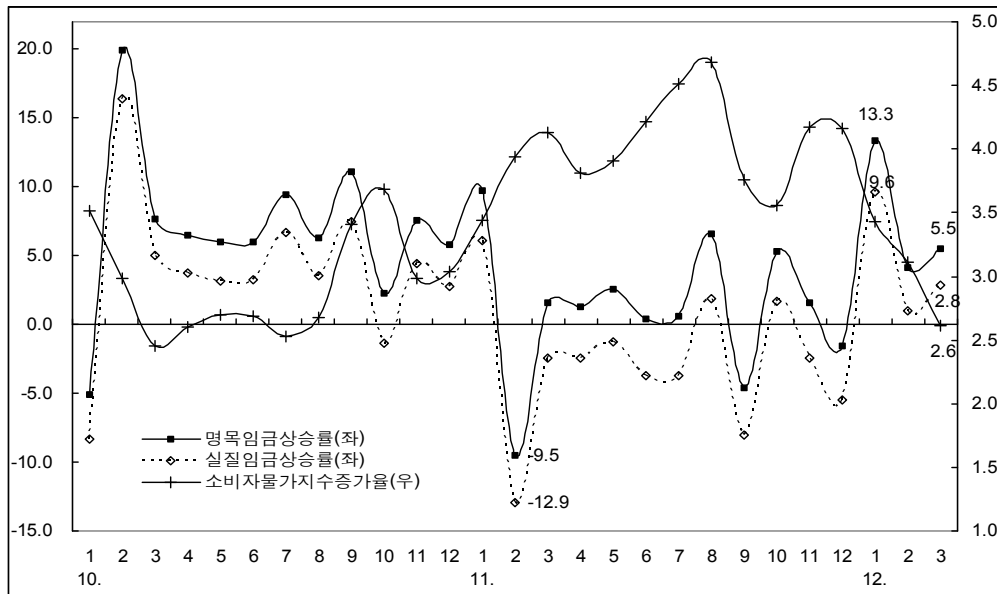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 2010=100.0)

	2009	2010	2011	2012			
				1/4분기	3월	1/4분기	3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636 (2.6)	2,816 (6.8)	2,844 (1.0)	2,830 (0.2)	2,732 (1.6)	3,051 (7.8)	2,883 (5.5)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863 (2.2)	3,047 (6.4)	3,019 (-0.9)	2,992 (-1.3)	3,223 (7.7)	3,053 (5.3)
	정액급여	2,139 (4.0)	2,234 (4.5)	2,341 (4.8)	2,308 (4.4)	2,323 (4.8)	2,443 (5.9)
	초과급여	175 (-2.2)	196 (12.2)	179 (-8.4)	168 (-8.4)	176 (-8.0)	175 (4.4)
	특별급여	550 (-2.8)	617 (12.3)	498 (-19.3)	516 (-18.9)	399 (-15.4)	604 (17.0)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073 (1.9)	1,056 (-1.6)	1,215 (15.1)	1,149 (9.2)	1,142 (12.8)	1,306 (13.7)	1,287 (12.7)
소비자물가지수	97.1 (2.8)	100.0 (2.9)	104.0 (4.0)	102.8 (3.8)	103.3 (4.1)	105.9 (3.0)	106.0 (2.6)
실질임금증가율	-0.1	3.8	-2.9	-3.5	-2.4	4.7	2.8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3월 전 산업에서 임금상승률 증가

- 2012년 3월 기준 부동산 및 임대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음.
 - 2012년 3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10.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9%), 금융 및 보험업(7.8%) 등에서 임금 상승률이 크게 나타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및 특별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액급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1/4분기 기준 제조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년 1/4분기 전 산업에서 임금이 증가함.
 - 특히 제조업(10.5%), 부동산 및 임대업(10.3%), 운수업(9.9%), 도·소매업(9.0%) 등에서 두드러짐.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4분기		3월	
			1/4분기	3월	1/4분기	3월
전 산업	2,816 (6.8)	2,844 (1.0)	2,830 (0.2)	2,732 (1.6)	3,051 (7.8)	2,883 (5.5)
광업	3,000 (7.3)	3,309 (10.3)	3,162 (10.7)	3,141 (18.9)	3,385 (7.0)	3,337 (6.3)
제조업	2,985 (9.1)	3,034 (1.6)	2,980 (1.9)	2,781 (6.3)	3,292 (10.5)	2,967 (6.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 (7.0)	5,482 (0.5)	5,017 (0.9)	5,614 (-2.6)	5,105 (1.8)	5,927 (5.6)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5.2)	2,488 (1.9)	2,410 (-0.4)	2,357 (1.8)	2,573 (6.8)	2,491 (5.7)
건설업	1,944 (7.9)	2,181 (12.2)	2,212 (8.4)	2,200 (9.4)	2,335 (5.5)	2,254 (2.5)
도매 및 소매업	2,769 (7.1)	2,942 (6.3)	2,883 (1.4)	2,842 (1.5)	3,142 (9.0)	2,989 (5.1)
운수업	2,381 (5.4)	2,393 (0.5)	2,288 (-0.5)	2,287 (2.5)	2,515 (9.9)	2,416 (5.6)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5.0)	1,653 (13.0)	1,613 (11.7)	1,547 (9.3)	1,705 (5.7)	1,648 (6.5)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4.7)	3,692 (9.1)	3,751 (10.2)	3,804 (14.7)	4,044 (7.8)	4,093 (7.6)
금융 및 보험업	4,680 (4.7)	4,771 (1.9)	5,005 (0.0)	4,893 (0.8)	5,320 (6.3)	5,276 (7.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4.3)	2,017 (2.6)	1,999 (4.6)	1,925 (2.2)	2,205 (10.3)	2,132 (10.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6.9)	3,870 (-2.2)	3,722 (-3.2)	3,665 (-4.5)	4,066 (9.2)	3,884 (6.0)
사업서비스업	1,848 (8.2)	1,700 (-8.0)	1,672 (-9.0)	1,647 (-8.2)	1,771 (5.9)	1,716 (4.2)
교육서비스업	3,157 (1.4)	2,985 (-5.4)	3,168 (-5.2)	2,890 (-3.1)	3,300 (4.2)	2,929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2.4)	2,490 (-4.0)	2,460 (-4.8)	2,388 (-6.6)	2,648 (7.6)	2,602 (8.9)
여가관련서비스업	2,107 (0.9)	2,130 (1.1)	2,140 (2.5)	2,057 (4.6)	2,161 (1.0)	2,118 (2.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4.0)	2,185 (3.9)	2,171 (2.5)	2,069 (3.0)	2,258 (4.0)	2,125 (2.7)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3월 사업체 전 규모에서 임금상승률 증가

- 2012년 3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 상승률은 5~299인 규모와 300인 이상 사업체 모두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은 2012년 3월 기준 2,737천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5.9% 상승하였으며, 정액급여(6.0%), 초과급여(8.0%), 특별급여(3.7%) 모두 증가한 영향임.
 - 300인 이상 사업체의 2012년 3월 상용임금총액은 4,176천 원으로 2011년 3월 대비 2.0% 상승하였으며, 이는 정액급여의 상승(3.0%)에 기인함.
 - 반면, 300인 이상 규모의 초과급여(-0.9%)와 특별급여(-0.2%)는 감소함.
- 2012년 1/4분기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증가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7.0%)과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상승률(6.7%)은 모두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초과급여와 특별급여도 5~299인 규모와 300인 이상 규모 모두에서 상승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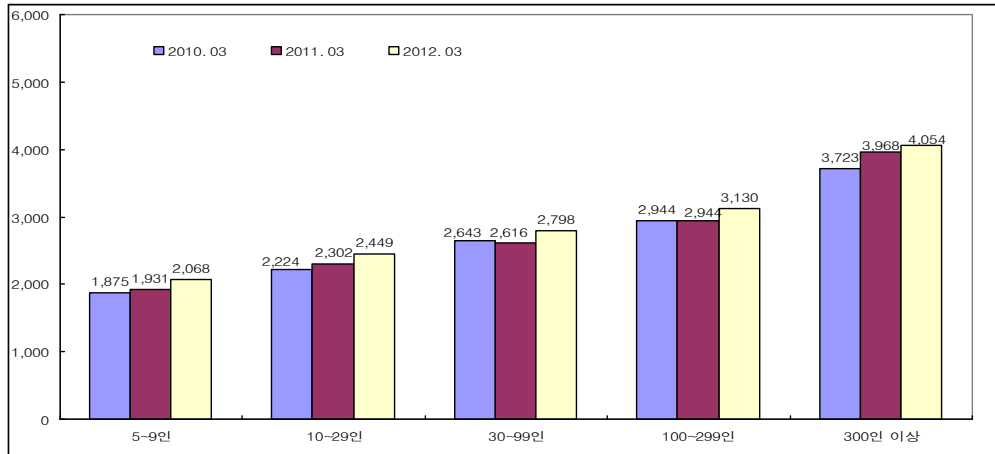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4분기		3월	
				1/4분기	3월	1/4분기	3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47 (6.4)	3,019 (-0.9)	2,992 (-1.3)	2,899 (0.6)	3,223 (7.7)	3,053 (5.3)
	정액급여	2,234 (4.5)	2,341 (4.8)	2,308 (4.4)	2,323 (4.8)	2,443 (5.9)	2,452 (5.6)
	초과급여	196(12.2)	179(-8.4)	168 (-8.4)	176 (-8.0)	175(4.4)	187(5.8)
	특별급여	617(12.3)	498(-19.3)	516(-18.9)	399(-15.4)	604(17.0)	414(3.7)
	비상용임금총액	1,056(-1.6)	1,215(15.1)	1,149(9.2)	1,142(12.8)	1,306(13.7)	1,287(12.7)
5~299인	상용임금총액	2,699 (5.5)	2,675 (-0.9)	2,641 (-1.7)	2,584 (-0.8)	2,827 (7.0)	2,737 (5.9)
	정액급여	2,082(4.3)	2,204(5.9)	2,167 (5.4)	2,174 (5.7)	2,302(6.2)	2,306(6.0)
	초과급여	176(13.6)	150(-14.5)	141(-14.7)	146(-15.4)	148(4.8)	158(8.0)
	특별급여	441(8.4)	321(-27.3)	333(-28.6)	263(-29.7)	377(13.2)	273(3.7)
	비상용임금총액	1,059(-1.6)	1,216(14.8)	1,148 (9.8)	1,153 (13.4)	1,314(14.4)	1,304(13.2)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291 (9.1)	4,273 (-0.4)	4,335 (2.1)	4,095 (6.0)	4,624 (6.7)	4,176 (2.0)
	정액급여	2,779 (5.2)	2,842(2.3)	2,847 (3.2)	2,887 (3.7)	2,944(3.4)	2,973(3.0)
	초과급여	268(9.6)	286(6.7)	269 (9.7)	292 (12.3)	271(0.7)	290(-0.9)
	특별급여	1,245(18.7)	1,146(-8.0)	1,219 (-1.9)	916 (11.7)	1,409(15.6)	914(-0.2)
	비상용임금총액	1,025(-0.3)	1,208(17.8)	1,155 (2.1)	1,028 (5.0)	1,208(4.6)	1,095(6.6)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8] 상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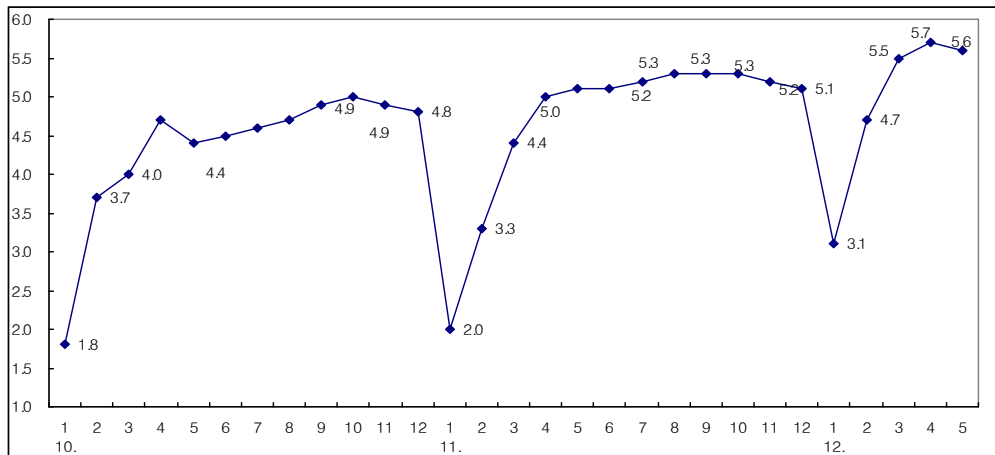
◆ 2012년 5월 협약임금 인상률 5.6%

○ 2012년 5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5.6%를 기록함.

- 2012년 5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5.6%로 2011년 5월 인상률(5.1%)에 비해 0.5%p 상승함.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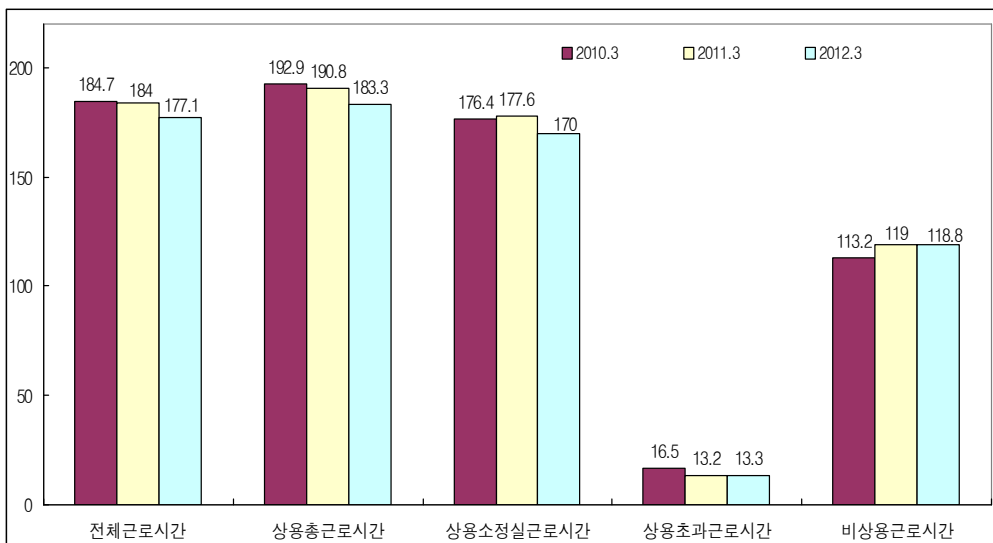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2년 3월 근로시간, 3.8% 감소

- 2012년 3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함.
 - 2012년 3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7.1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84.0시간)에 비해 3.3시간(3.8%) 감소함(그림 10 참조).
 - 근로시간의 감소는 2011년 3월에 비해 월력상 근로일이 1일 적은 데 기인함.
- 2012년 1/4분기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함.
 - 2012년 1/4분기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4.7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기(172.1시간)에 비해 2.6시간(1.5%) 증가함.

[그림 10]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3월 전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2년 3월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2년 3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교육서비스업(151.7시간, -6.5%)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165.0시간, -5.0%) 등 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2년 3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7.2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육서비스업(151.7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2년 1/4분기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2년 1/4분기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사업서비스업(173.2시간, 4.2%), 운수업(181.6시간, 3.5%), 숙박 및 음식점업(185.9, 3.0%) 등 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표 9>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0	2011	2012			
			1/4분기		3월	
			1/4분기	3월	1/4분기	3월
전 산업	176.7(0.3)	176.3(-0.2)	172.1(-0.5)	184.0(-0.4)	174.7(1.5)	177.1(-3.8)
광업	188.1(0.3)	186.9(-0.6)	180.0(-1.4)	196.1(2.5)	185.5(3.1)	189.3(-3.5)
제조업	192.1(1.9)	190.6(-0.8)	185.8(-0.5)	199.1(-1.0)	186.6(0.4)	190.9(-4.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6.9(-0.6)	177.1(0.1)	171.8(-0.3)	178.3(-0.5)	175.2(2.0)	174.5(-2.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92.9(-0.6)	186.2(-3.5)	180.5(-4.7)	193.2(-4.2)	184.5(2.2)	189.3(-2.0)
건설업	146.1(-0.7)	153.9(5.3)	152.9(4.9)	160.7(3.9)	153.4(0.3)	153.7(-4.4)
도매 및 소매업	177.2(-1.0)	175.1(-1.2)	170.6(-1.2)	182.2(-0.9)	173.8(1.9)	176.1(-3.3)
운수업	184.6(0.1)	181.6(-1.6)	175.4(-3.7)	186.0(-2.8)	181.6(3.5)	184.2(-1.0)
숙박 및 음식점업	163.7(-0.4)	186.2(13.7)	180.4(12.6)	185.6(13.5)	185.9(3.0)	183.0(-1.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6.2(-0.4)	164.5(-1.0)	160.1(-1.6)	173.6(-0.1)	162.7(1.6)	165.0(-5.0)
금융 및 보험업	165.3(-0.9)	163.6(-1.0)	158.7(-2.0)	172.3(-1.0)	163.8(3.2)	165.5(-3.9)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0.4(-0.8)	194.2(-3.1)	192.2(-3.1)	200.9(-4.4)	195.4(1.7)	197.2(-1.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3(-0.8)	166.2(-0.1)	161.5(-0.7)	175.7(0.7)	165.3(2.4)	167.9(-4.4)
사업서비스업	180.1(0.6)	172.1(-4.4)	166.2(-5.4)	180.4(-2.8)	173.2(4.2)	174.4(-3.3)
교육서비스업	149.9(-2.5)	152.9(2.0)	149.0(1.3)	162.2(2.7)	152.1(2.1)	151.7(-6.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5(0.1)	173.5(-1.7)	169.5(-1.4)	180.1(-2.3)	173.9(2.6)	176.9(-1.8)
여가관련서비스업	158.7(-1.8)	157.1(-1.0)	152.7(-1.4)	162.8(-0.2)	155.3(1.7)	160.1(-1.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9(-0.9)	173.6(-0.2)	171.4(-0.3)	181.8(0.8)	168.3(-1.8)	171.5(-5.7)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3월 전 규모 사업체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2년 3월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은 전체 모두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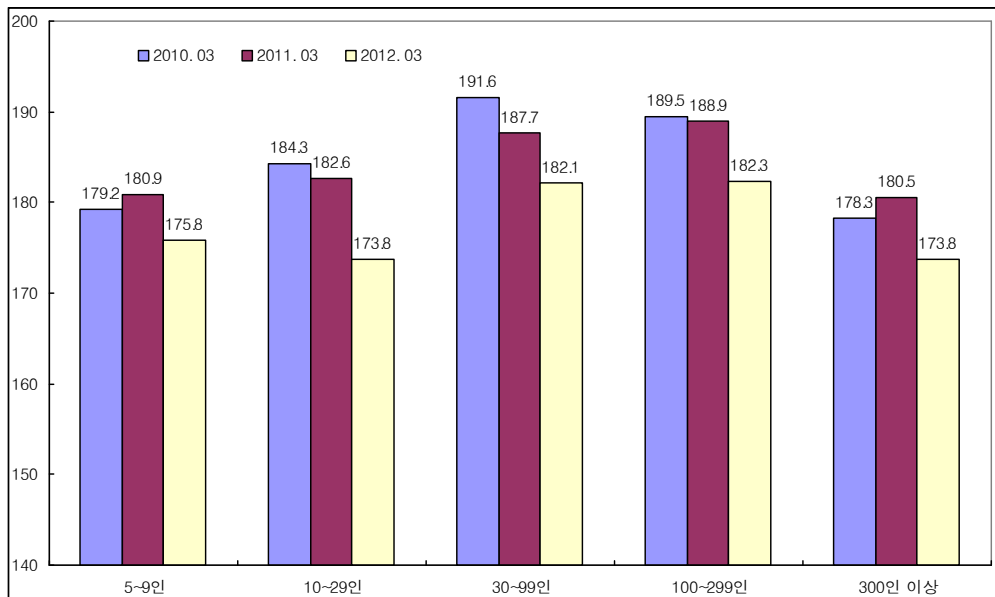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5.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8%,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8%, 30~99인 사

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2.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0%,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2.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5%,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함(그림 11 참조).

- 한편 2012년 1/4분기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은 전체 모두 증가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0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1.8%,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0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1%,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8.5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2.5%,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0.2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2.3%,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1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함.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주 :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2년 6월 25일 현재 노사분규 동향을 살펴보면,
 - 분규 발생건수는 33건으로 전년동기(1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근로손실인수는 223,574일로 전년동기(161,482일)에 비해 3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표 10>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12. 1. 1.~6. 25	전년 동기	증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33	18	
종결	18	11	
진행	15 (3)	7 (6)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223,574	161,482	38.5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6월 20일 기준임.
 부분파업으로 인해 일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 주요 언론사 파업 현황

- 한국방송공사(KBS)와 국민일보, 파업종료 후 업무복귀 결정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6월 8일 오전 5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
 - KBS본부 새노조는 지난 3월 6일 ‘공정방송 회복과 김인규 사장 퇴진’ 등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하였음.
 - 노조는 파업 93일째인 6월 6일 사측과 업무복귀를 위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익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통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업무복귀를 결정함. 김현석 새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현장으로 복귀해 보도 투쟁과 공정방송 투쟁을 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귀 배경을 밝힘.
 - ※ 대의원 69명 중 투표 67명, 찬성 53명(투표자 79.1%), 반대 11명, 무효 3

- 사측은 7일 '94일간 장기파업 종료에 대한 KBS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종료 및 업무정상화를 선언하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힘. 또 “이번 협상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켰으며, 공식합의 외 그 어떤 이면합의도 없다”고 강조함.

※ 【합의서 내용】 ▲조합은 6.8 05:00부터 파업중단하고 업무복귀 ▲공사와 조합은 '12년 대선방송 등 공정방송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공사와 조합은 상호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영방송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 ▲공사와 조합은 라디오 매체 활성화 노력

－ 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도 6월 14일 오전 9시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

- 국민일보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편집권 독립과 조민제 사장 퇴진’ 등을 내걸고 파업을 시작
- 지부는 6월 12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사측과의 전일 재협상 결과를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해 173일간의 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함. 이에 앞서 노조는 양측이 5월 22일에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으나 조합원 표결을 미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노사 쟁점인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노조가 조민제 전 사장에게 직접 사과하고, 회사가 조사장에게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노사는 종교면 개혁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파업참가자 89명 투표 85명, 찬성 50명(56.2%), 반대 33명, 기권 2명

※ 【합의서 내용】 ▲공정보도를 위한 지면 평가위원회 1개월 이내 가동 ▲파업기간 중 민형사상 고소·고발·진청 취하 착수 ▲파업사태 정리와 지면쇄신을 위한 TF팀 구성 ▲임금 4.5% 인상

- 노조는 6월 18일 사측이 당일 발표한 80여 명(조합원 70여 명 포함)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반발하면서 이날부터 3일간 집단 연차휴가 투쟁에 돌입함과 동시에 본사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 시작함.

○ 언론노조 MBC본부 서울지부는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월 30일부터 6월 22일 현재까지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음(파업 145일차).

- － 정영하 MBC노조 위원장은 KBS본부 새노조가 업무에 복귀하기로 한 6월 6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문화방송과 한국방송은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김재철 사장은 법인카드 유용 등 윤리경영을 실천하지 못한 부적격 인사”이기 때문에 사장퇴진 시까지 파업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함. 노조는 5월 29일 김재철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추가 고발함. 앞서 노조는 김재철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2차례 고발한 바 있음(3월 6일, 4월 25일).

- 사측은 5월 30일 시용기자(14명) 채용에 맞서 반대집회를 주도한 노조간부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박성호 기자회견을 해고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6월, 1월의 징계조치를 확정함. 6월 11일 회사 측은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박성호 해고안을 확정함. 6월 19일 1차 대기발령자 중 13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속개함. 앞서 회사 측은 6월 4일 1차 대기발령(35명)을, 그리고 6월 11일 2차 대기발령(34명)을 내린 바 있음.
- 사측은 또 6월 20일 1차 대기발령자 중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함.
 - 해고 2명(최승호·박성제 前 PD수첩 PD), 정직 1~6월 11명(김민식 PD 등)
 - ※ 파업(1.30) 이후 현재까지 총 46명 징계(해고 6명, 정직 40명)
- 한편 6월 7일 서울남부지법은 서울남부지검이 6월 5일에 제출한 노조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원 기각 결정을 내림. 앞서 지난 5월 21일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음. 하지만 법원은 6월 13일 사측이 노조와 집행부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결정함.

○ 연합뉴스 노조는 6월 26일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함.

- 3월 15일부터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에 봉착한 연합뉴스 노사는 6월 25일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6월 26일자로 업무에 복귀함.
 - ※ 【합의내용】 ▲보도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특위 운영 ▲편집권 독립을 제도로 보장 ▲중간평가 대신 공정보도 책임평가제 실시(대상: <가칭>편집총국장 및 제작국장) ▲인사공정성 강화 노력(노조의 문제 제기시 답변의무) ▲인력 채용 및 운용에 있어 차별해소 노력 ▲민형사 면책
- 노조는 6월 23일~25일 ‘잠정합의안 추인 및 파업해제’에 대한 조합원 투표(재투표)를 실시
 - ※ 재적 544명 중 470명 투표, 찬성 329명(재적대비 60.5%)
 - 앞서 노조는 6월 22일 ‘노사 잠정합의안(6월 20일)’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지만 노조규약의 의결정족수 문제로 재투표를 결정한 바 있음.
- 지난 6월 5일부터 노사 간에 대화국면이 전개되면서 파업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음. 양측은 공정보도를 위한 기구 설치, 파업 참가자 징계 및 업무복귀자에 대한 처우, 방송채널인 ‘뉴스와이’ 파견·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고 논의결과에 따라 타결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 YTN은 노조가 6월 25일 10차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불안정한 노사관계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음.

- YTN 노조가 지난 11일 9차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 뒤 노사 간에 실무교

섭을 진행하였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6월 25일 10차 파업에 돌입함.

- 노조는 이번 파업을 7월 2일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밝힘.
- 9차 파업 이후 노사간 실무교섭(6월 22일)을 진행하였지만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전없이 협상 종료
 - ※ 파업현황: ▲1차(3.8~3.9) ▲2차(3.16) ▲3차(3.23) ▲4차(3.29~3.30, 4.2~4.3) ▲5차(4.6) ▲6차(4.13, 4.16) ▲7차(4.20) ▲8차(5.14~5.25) ▲9차(6.4~6.10)
 - ※ 【주요쟁점 노<사>】
 - ▲임협: 기본급 대비 9% 인상(당초 11%→10%) <기본급 대비 5% 인상(당초 2%→4%→4.5%)> ▲단협: 종전 '08년 단협 조항 복원(파업시 참가자 범위, 인사권 침해조항 등) <현행 단협 유지('10년 단협)> * 단협은 조정과정에서 노조가 요구안을 철회한 바 있음.

◆ 운수업계 노사관계 동향

○ 전주시내버스 5개사의 노사 양측이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싼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전주시내버스 5개사의 공공운수노조 5개 분회는 근무일수 단축·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3월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함. 이에 맞서 사측 5개사는 운수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3월 20일부터 직장폐쇄 조치를 유지하고 있음.
- 4월 2일까지 5개사 노사간 공동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중단된 상황임.
- 5월 23일 노조 측이 사측에 개별교섭을 요구하였고, 6월 초부터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 6월 12일 사측 5개사는 운수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한 직장폐쇄 조치를 철회함. 이에 따라 4개사 노사 양측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호남고속은 한국노총 소속 전북자동차노조와의 교섭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교섭 주요내용】 ▲제일여객: <노>'11년 단체교섭 요구 ↔ <사>'12년 임금교섭만 가능 주장 → <노>'12 임금협약 안 제시; 6.21 차기교섭 ▲전일여객: '11년 교섭안에 대해 논의; 6.19 차기교섭 ▲신성여객: <노>'11년 단체교섭 요구 ↔ <사>'12년 임금교섭만 가능 주장 ▲시민여객: <노>노조 제시안대로 단협체결 요구 ↔ <사> 다른 회사들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

○ 전북고속의 경우 노사간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음.

- 공공운수노조 전북고속지회는 단체교섭과 관련해 2010년 12월 8일부터 파업을 진

행 중인. 회사는 노조의 파업에 맞서 동년 12월 16일 직장폐쇄를 단행함.

- 노조는 올해 5월 10일 사측에 '기본합의서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사측은 5월 22일 전북자동차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었으므로 공공운수노조와는 개별교섭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
- 이에 따라 노사간 교섭 시도가 실패하면서 양자 간 갈등관계가 장기화·고착화되고 있음.

○ 택시업계 4개 단체, 20일 일일 운행중단 시위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20일 하루 동안 전남 여수를 제외한 전국의 택시 운행을 멈추고, 오후 1시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함.
- 사업주와 노조가 이처럼 전국 규모로 택시 운행을 중단하고 공동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은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LPG 가격 안정화 ▲택시연료 다양화 ▲택시요금 현실화 ▲감차 보상 대책 등 다섯 가지임. 택시업계는 이번 운행중단 시위를 통해 택시를 버스나 철도 등과 같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정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택시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큰 LPG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에 2차 대규모 집회와 12월 대선 국면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함.
- 이러한 택시업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지 않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우며, 또 국제 유가 상승 등 외부요인에 의해 인상된 LPG 가격 문제를 정부가 임의적으로 보전해 주기 어렵다는 반응임.

◆ 현대자동차,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 현대자동차는 6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최병승 씨를 복직하도록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 회사 측은 대법원이 최씨를 정규직이라고 한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회사의 인사규칙상 최씨의 노무수령 거부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소송 배경을 설명

-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5월 2일 “현대차가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년 7월에는 “현대차는 최씨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최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지만,
 - 대법원이 2010년 7월 “현대차가 최씨의 사용자”라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뒤 마침내 2012년 2월 대법원이 ‘최씨 승소’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최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결정을 내린 것임.

○ 한편 현대자동차는 6월 11일 사내하청 근로자를 직영 기간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는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음.

- 현대자동차는 7월 말까지 2년 미만의 사내하청 근로자 1,546명을 직영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회사 측은 “오는 8월 발효되는 파견법이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사내하도급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일부 공정에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직접 채용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
- 하지만 노동계는 현대자동차의 이번 조치는 개정 파견법에 따른 정규직화를 피하면서 고용유연화를 추진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함.
 - 금속노조는 개정 파견법이 적용되면 불법파견 판정 시 일한 기간에 상관없이 즉각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측이 이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 주장
 - 특히 계약해지 대상 1,546명 중에는 213명의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노조는 현대자동차가 이들과의 고용계약 해지를 위해 하청업체와의 공정계약 수를 줄이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번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

◆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지원 및 신규채용 논란

○ 쌍용자동차 노사가 6월 13일 무급휴직자들에게도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당사자인 무급휴직자들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국회 개원에 즈음한 면피용 지원방안이며 ‘8·6 노사합의’를 기만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음.

- 쌍용자동차는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자에게도 자녀 학자금 지원, 회사 주식 150주 지급, 그리고 복직 시까지 협력업체 취업 알선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공표함. 이번 방안의 지원 대상은 2009년 8월 6일 노사대타협 이후의 무급휴직자 460여 명이고, 400명에 이르는 희망퇴직자나 정리해고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짐.
 - 회사 측은 이번 합의는 “무급휴직자들의 생활고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함.
 - 이에 대해 당사자인 무급휴직자들과 쌍용차지부는 회사가 고민하고 제시해야 하는 것은 한두 가지 복지혜택이 아니라 휴직자와 정리해고자들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이에 앞서 쌍용자동차가 지난 4월 채용(신입 및 경력사원)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회사 측이 ‘2009년 8·6 노사대타협’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음.
- 참여연대는 쌍용자동차의 신규채용과 관련해 5월 9일 고용노동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 회사 측이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25조(우선재고용의무 조항)를 위반했다고 지적하였음.
 - 참여연대가 6월 6일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요약하면,
 - 먼저, 채용예정 업무가 무급휴직자 등이 종사하였던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이들을 우선 채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보기 곤란하고,
 - 또한 근로기준법 25조는 해고자가 담당했던 동일한 업무에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금번 채용공고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임.
 -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노사대타협에 해고노동자의 일정 비율을 영입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는 합의 내용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엄밀한 판단 없이 회사 측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함.
- 한편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발족되어, 향후 활동 과정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과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차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공식 제안
 - 이들 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약칭 ‘쌍차의원 모임’은 쌍용차 문제해결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및 22인의 희생자와 관련한 진상조사사업 ▲정리해고 제도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위

한 법률개정 활동 ▲쌍용차 정리해고자 등의 명예회복 및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을 살리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힘.

◆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거듭 끝에 2013년도 최저임금 결정

○ 2013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으로 결정됨.

-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오후 7시 10분부터 30일 새벽 1시 48분까지 열린 제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4,860원으로 의결함.
 -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금액으로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101만 5천740원임.
 -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 근로자 258만여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함.
 - 이날 표결은 노·사·공익위원 27명 중 양대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1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됨. 참석위원 18명 중 공익위원 9명과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1명이 찬성표를, 사용자위원 8명은 기권표를 행사함.
-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내어 “최저임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양대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데다,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근로자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비판함.
- 반면 한국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최저임금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제상황을 무시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기업활동과 취약계층의 일 자리를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함.

○ 그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양대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회의 참가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거듭해 오고 있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양대노총 소속 위원들이 위원 위촉 절차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4월 27일 2차 회의부터 9차 회의까지 참가하지 않고 있음.
-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6월 27일부터 28일에 걸쳐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위원들이 공익안에 반발하며 퇴장하였고, 이후 6월 28일 오후 7시에 열린 제11차 회의도 공익위원만 참석하고 노·사 위원은 불참하는 파행을 거듭함.
- 양대노총은 정부가 노동계 및 사용자 단체와의 협의 없이 공익위원을 위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음. 더구나 정부가 국민노총 간부

한 명을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한 것 또한 양대노총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양대노총은 21일부터 28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연대농성을 벌인다는 입장을 밝히고, 21일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함.

- 전국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단체 등 경영계는 6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근로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해 줄 것을 요구함.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노동계의 장외투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이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노동계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 바 있음.
-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법령(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을 뿐 노사단체와의 협의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양대노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와 같은 노·사·정 간의 대립 구도하에서 법정 시한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대한 근로자위원들을 전원회의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논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음.

○ 한편 양대노총은 지난 6월 11일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31호(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협약)와 권고안 30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ILO에 제소한 것으로 드러남.

◆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업무상 산업재해 입증책임을 피해자와 상대방(국가, 사업주 등)이 배분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
 - 인권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산재 인정 여부로 다툼이 있을 경우 피해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사용자나 국가가 증명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함. 대신 피해 근로자는 질병에 걸린 사실과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분담토록 함.
 -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유해·위험물질을 충분히 다룬 것 △유해·위험물질을 다룬 것 등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피해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보고

있음. 고용노동부가 의학적 인과관계 등의 증명은 피해 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요건 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 근로자에게 피해가 부담되는 현실을 볼 때 사실상의 입증 부담은 피해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임.

- 인권위원회는 아울러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추가·보완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주문
 -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이 산업재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 산업의 발달과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발생, 증가하고 있는 직업병 등을 조사·검토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 이 밖에 인권위원회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서상의 사업주 날인 제도는 급여 신청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함.
- 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비해 재계의 반응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이후 법 개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됨.
 - 노동계는 산재 입증책임 배분과 인정기준 개선에 대한 인권위 권고를 환영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양자가 배분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사업주와 정부가 져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경총은 이날 ‘인권위 업무상 입증책임 배분 권고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인권위 권고안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의 일반원리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함. 또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반질환이 무분별하게 산재 판정이 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산재기금의 안정성도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전국 시행

- 7월 1일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
 - 정부는 6월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유도하는 사회보험 사각

- 지대 해소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7월 전국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
- 동 지원사업은 6월 말까지 16개 기초자치단체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사회보험의 중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 아울러 지방노동관서,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운영하고, 소규모사업장에 ‘찾아가는 가입확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중심의 가입확대 활동을 전개하는 데 주력하기로 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개요

- 대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 지원
 - 월 평균 35만 원 이상 105만 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 월 평균 10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 지원방식: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 완납시 지원

○ 한편 정부는 6월 13일 업종별협의회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새로 시행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홍보하고 이의 가입확대를 도모

- 이날 협약서 체결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업종별 대표회의 9곳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했으며,
- 이번 협약을 통해 업종별협의회는 회원사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로 결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동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산재 근로자가 계좌로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압류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압류금지 전용계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 과거에는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연금이 당사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계좌가 없거나 계좌를 만들어도 압류될 가능성이 높았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9월 은행과 협약을 맺고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음.

- 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격도 개선키로 함.
 - 지금까지 근로자가 사망하면 자녀 및 손자녀에게 유족연금을 17세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 근로자가 사망하면 기존에는 아내는 연령과 상관없이, 남편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기로 함. **KLI**

(강병식, 노동정책분석실 전문위원)